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4
----------	------

발의연월일 : 2005. 7. 22.

발 의 자 : 단병호·강기갑·권영길  
노회찬·심상정·이영순  
조승수·천영세·최순영  
현애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 부담 여부와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단계 이상의 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 직상수급인이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단계 도급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6항).

나.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7항).

##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563호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각각 본다.

부 칙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6條(最低賃金の 效力) ① ~ ⑤ (생 략)</p> <p>⑥2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2.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p>	<p>第6條(最低賃金の 效力)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p> <p>2. 도급인이 도급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p>

<p><u>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u> <u>인하한 행위</u> <u>&lt;신 설&gt;</u></p>	<p><u>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u> <u>한 행위</u> <u>⑧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u> <u>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6</u> <u>항 및 제7항의 수급인을 하수급</u> <u>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u> <u>로 각각 본다.</u></p>
--	---